

2019년도 제121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7. 18.(목)~19.(금)
- 장 소 : 속초 델피노리조트 C동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9명
 - 심의위원 : 박성호(심의위원장), 강상욱, 강호갑, 백대용, 손승우, 임진모, 전용준, 정태호, 최승수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 | | |
|---|------|
|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위원장 |
| 2. 전차(제2019-9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심의위원 |
| 3. 안건상정 | 위원장 |
| 〈보고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
| · 제1호 : 2019년 상반기 심의 및 시정권고 현황 | |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
|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
| 〈논의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정현순 전문위원 | |
| · 제1호 : 불법복제물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 | |
| · 제2호 : 저작권 보호 심의기능 강화 방안 | |
| 4. 폐회선언 | 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보고안건

○ 제1호 : 2019년 상반기 심의 및 시정권고 현황

- 주요내용

- 2019년 불법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현황
- 부문별 상세 시정권고 현황

2.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 안건번호 제2019-72590호는 네이버 밴드 내 단체채팅방에서 음악 저작물을 불법 공유한 것으로, 단체채팅방에서 공유되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1분과위원회(2019. 6. 27. 개최, 제2019-103회)가 결정한 사안임
- 안건번호 제2019-72591호는 우리말로 직접 번역한 일본 애니메이션 자막 파일을 개인 블로그에서 제공한 것으로, 기존 자막 파일 게시물에 대한 심의 안건들과 차이가 있어 전체심의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3분과위원회(2019. 7. 1. 개최, 제2019-104회)가 결정한 사안임
- 안건번호 제2019-72592호, 72593호는 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프레이밍 링크를 통해 해외 '리치사이트' 화면을 보여준 것으로, 불

법복제물 업로더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를 간접 방조하는 사안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심의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1분과위원회(2019. 7. 11. 개최, 제2019-112회)가 결정한 사안임

- 안전번호 제2019-72594호는 사설서버 게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다음(daum) 카페의 이용자가 게임 캐릭터 이미지를 제공한 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인 게임물이 아닌 게임 캐릭터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심의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3분과위원회(2019. 7. 15. 개최, 제2019-116회)가 결정한 사안임

- 회의결과

- 안전번호 제2019-72590호는 밴드 내 채팅방은 정치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으로 불법복제물 공유를 위해 개설된 채팅방은 아닌 점, 민원인이 신고한 불법복제물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밴드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전기통신의 일부인 점, 채팅방 특성상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주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게시자 또한 채팅방 입장 시 밴드 아이디와 다르게 채팅방 아이디를 설정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부결
- 안전번호 제2019-72591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의 자막파일이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원 저작물 저작권자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 가결
- 안전번호 제2019-72592호, 72593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의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리치사이트' 화면이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를 방조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 가결
- 안전번호 제2019-72594호는 게임 프로그램과 별도로 독자적인 창작

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게임 캐릭터의 복제물을 무단 전송한 사안이나,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 권고를 하면 해당 카페 전체가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

3. 논의안건

○ 제1호 : 불법복제물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

- 주요내용

-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저작권침해가 이루어지는 사안에서 보호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보호원과 심의위원회가 저작권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이번 전체심의위원회에서는 불법복제물의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함

○ 제2호 : 저작권 보호 심의기능 강화 방안

- 주요내용

- 심의대상 안건의 다양화, 심의의 공정성·중립성 강화 요구 증가, 심의위원 증원 등 상황 변화에 따른 저작권 심의기능 강화 방안
- 대해 논의하고자 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21회 저작권보호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9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회의록 공개에 이의 없음
- B 위원 : 회의록에 이상 없으며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박성호 심의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개인정보가 드러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보고안건

○ 제1호 : 2019년 상반기 심의 및 시정권고 현황

- 성원영 전문위원이 2019년 상반기 심의 및 시정권고 현황에 대한 주요 실적을 보고함

4.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72590호~72594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5건임
밴드 내 단체채팅방에서 불법복제물이 공유되고 있다고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채팅방에서는 정치 현안 관련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해당 밴드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것은 아니며, 밴드 내 단체채팅방에서 불법복제물 전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단체채팅방 내 파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경우 불법복제물 제공과 무관한 다른 대화방참여자들의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생길 수 있음
한편, 심의위원회는 게시물 주소를 특정하여 시정권고 심의를 하고, 보호원은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집행하고 있는데, 단체채팅방에서 전송된 파일의 경우 채팅방 주소가 아닌 게시물 주소는 특정되지 않음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심의안건에 대한 채증 화면을 요청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며)보호원 직원이 민원인 신고에 따라 해당 채팅방을 조사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채팅방에서는 정치현안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음
- C 위원 :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자료는 파일이 공유되고 있는 채팅방 화면을 캡처한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그렇다고 답변함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대법원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작용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므로, 그 기본 정신은 과세처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보호원은 밴드 내 단체채팅방에서 송수신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 채팅방에 입장하여 대화당사자의 동의 없이 채팅창 화면을 캡처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의 증거수집 행위가 적법·타당한 것인지에 관한 판례나 해석례는 찾지 못하였음
- C 위원 : 보호원에서 실시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채팅방에 대한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고 한다면, 민원인이 불법복제물을 신고하면서 캡처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도 과연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사인(私人)인 민원인이 수집한 자료와 행정기관인 보호원이 수집한 자료를 달리 취급할 여지가 있음
형사법적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대사인효에 관한 논의가 있는

데, 법원은 사인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이른바 비교형량설을 택하고 있음

즉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우위에 있는 경우에 증거로 허용한다는 의미임

과거 전체위원회 논의에서도 공권력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민원인이 수집한 증거자료가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보호원이 조사한 자료와 달리 봐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한편, 네이버 밴드 내 채팅방은 실시간으로 대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민원인이 복제물을 특정하여 신고하더라도 보호원 직원이 해당 채팅방에 입장하기 전 이루어진 복제물의 전송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음

(보호원이 조사하여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한 다음 실시간 대화가 진행 중인 밴드 내 채팅방에 입장하여 지금 보고 게시는 화면을 캡처한 것임

- A 위원 : 밴드 내에 있는 채팅방인데 해당 밴드는 자유롭게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다고 전문위원이 보고했고, 본 건 채팅방은 밴드의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민원인이 신고한 곡은 '임재범의 너를 위해'인데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곡은 '모모'임

밴드가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채팅방도 밴드에 가입하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면 보호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의 요청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1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것으로 기억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과거 심의위원회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 불법

복제물에 관한 심의를 하면서 보호원이 실시간 대화방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를 한 바 있음

당시 문제가 된 오픈채팅방은 오로지 불법복제물 공유만을 위해 개설된 것으로 채팅방 자체 규칙으로 채팅방 내에서 음원파일 공유와 무관한 대화가 금지되어 있었음

네이버 밴드에서 전송되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올해 전체위원회에서 입장이 정리된 바 있음

네이버 밴드 내 채팅방에서 제공된 불법복제물에 대한 심의는 최초 사례로 알고 있음

본 건은 우선 보호원 직원이 밴드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후 밴드 내 채팅방에 입장하여 불법복제물 전송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나아가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보호원의 조사가 타당한지 명확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민원인이 특정하지 않은 불법복제물을 보호원이 임의로 선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도 있음

- D 위원 : 오늘 논의하는 밴드 채팅방 관련해서는 SNS에서 이뤄지는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과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이 있음
네이버 밴드처럼 일반 블로그가 아닌 SNS에서의 불법복제물이 공유되는 사안들이 많이 제기되어 네이버 밴드를 심의위원회에서 유의하여 심의, 의결하고 있음

이에 네이버 밴드 내 채팅방에서 불법복제물이 복제·전송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지, 채증 과정 또는 채증 절차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생각됨

- E 위원 : 밴드는 게시물이 등록되면 밴드에 항상 고정되어 게시물이 업로드된 이후 밴드에 가입했다더라도 이전 게시글을 모두 볼 수 있지만, 밴드 내 채팅방은 채팅방 입장 이후에 제공된 파일 등만 확인이 가능함
 민원인이 저작물명을 특정하여 신고하였으나 보호원은 해당 복제물이 제공된 이후에 채팅방에 입장하였으므로, 민원인이 신고한 파일을 확인할 수 없음
 이 때문에 보호원은 동일 아이디 이용자가 채팅방에 제공한 다른 복제물을 심의 안건으로 올린 것임
- D 위원 : 민원인이 문제제기한 불법복제물에 대해 보호원의 채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쟁점은 동일함
 보호원 직원이 네이버 밴드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실시간 대화가 이루어지는 채팅방에 들어가서 채증을 하는 것이 적법절차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본 건과 관련된 쟁점도 있지만, 네이버 밴드와 같은 폐쇄적 성격의 인터넷 공간에서 행정기관이 모니터링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질적인 문제는 변함없음
- B 위원 :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언급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지금도 기록이 되고 있는 본 건의 밴드 채팅방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E 위원 : 밴드를 통해 불법복제물이 왕성하게 공유되고 있어 심의위원회에서 SNS의 폐쇄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던 종전의 입장에서

벗어나 2019년부터 시정권고를 전향적으로 하고 있음

채팅방은 사람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곳인데 아무런 신고 없이 보호원이 채팅방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음

하지만 본 건은 채팅방 구성원이 불법행위를 보고 보호원에 신고한 것으로 보호원 직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채팅방을 조사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에선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 D 위원 : 민원인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와 민원인이 불법복제물 전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만 기재해 신고하여 보호원 직원이 해당 채팅방에 접속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음

후자의 경우 보호원은 SNS 상에서 이루어진 개인과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조사하게 되는데, 증거를 수집하는 보호원 직원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는 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채팅방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위법이 없었는지 이의를 제기하면 보호원이 그동안 해왔던 옳은 행위들이 일부 사소한 적법절차와 관련된 쟁점 때문에 전체가 부정적인 관점에서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므로 보다 세심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 E 위원 :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 불법복제물 전송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는지 질의함

- D 위원 : 지난 전체위원회 회의 자료에도 남아있음
민원인이 증거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했다면 평가를 달리할 수 있을 것임

- A 위원 : 증거채증에 대한 적법성을 논의하기 전에 시정권고를 게시물 단위로 하기 때문에 채팅방에 대한 시정권고는 부적절함
이에 채팅방 자체는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봐야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지난 전체위원회에서 음원파일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 불법복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가결한 바 있음
심의결과에 따라 보호원은 불법복제물을 특정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카카오에 시정권고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카카오는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당 채팅방 전체를 차단하였음
결과적으로 채팅방이 차단되었는데, 해당 건의 경우 비례의 원칙이나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관점에서 보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았음
해당 오픈채팅방에서는 매일 수백 개의 음원파일이 제공되었고, 불법복제물 공유와 무관한 대화가 금지되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운영자가 강제탈퇴를 시키고 있었음
한편 저작권법은 게시물 단위로 시정권고를 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않고,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이라고 되어있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채팅방 내 특정 파일만 삭제 또는 전송중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와 같은 방식의 시정권고를 집행할 수 있을 것임

- A 위원 : 채팅방에 있는 파일들이 전부 불법복제물이라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많은 대화 중에 한 두 개 정도의 불법복제물을 올린 것으로 채팅방 전체를 삭제할 수는 없음
따라서 채팅방의 운영이 불법복제 전송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복제물 공유가 주된 목적이 아닌데 한 두 개가 게시된 것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검토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번 안전과 달리 본 건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목적으로 채팅방이 개설 및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님
- A 위원 : 증거 수집의 적법절차를 논의하기 전에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C 위원 : 통신비밀보호법 해석이 쟁점인데, 사건으로 본 건은 대화자 녹음이 아닌 전기통신감청으로 보임
대화자 녹음과 감청은 법적인 평가가 다른데, 대화자 녹음은 일방 당사자가 채록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반면 감청은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됨
전기통신감청과 대화자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자 녹음인은 증거능력이 이익형량에 따라 일부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전기통신감청은 증거능력이 부정될 것으로 보임
- D 위원 : 감청이면 영장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영

장없이도 할 수 있음

- C 위원 : 전기통신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3가지 예외만 있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이외에는 모두 불법임
예외적으로 대화자 녹음은 일방 당사자가 녹음할 수 있음

- B 위원 : 감청은 강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대화자
녹음은 접근권한이 있으면 대화당사자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오픈채팅방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접근권한이 있다고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누구든 접근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1단계로 밴드에
가입해야 함

- E 위원 : 밴드에 가입하고 채팅방에 들어가야 함

- B 위원 : 밴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밴드에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대화
내용의 지득 또는 채록에 대한 대화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임
주거침입 사례로 설명을 하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의 평
온인데,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해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구나 들어가도 되는 것은 아님
보호원 직원이 해당 밴드에 가입한 후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다고
해서 채팅방에 있는 대화 참여자들이 행정기관의 모니터링을 승낙
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함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정리하면 밴드 채팅방 사안은 채팅방 개설 목적이 불법복제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불법복제물이 공유되는 점이 부결사유의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불법복제물의 채증과 관련하여 최근 여성가족부 사례에 비취봤을 때도 문제소지가 있어 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전문위원 의견이라고 생각됨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증거 수집이 대화의 참여한 사람에 의해 이뤄졌는지 보호원 직원이나 공권력에 의해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D 위원 : 증거 수집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C 위원 : 감청은 주로 권한 없는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것인데 보호원이 밴드 채팅방에서 증거 수집한 것이 감청과 다를 바 없음
또한, 채팅방에서 대화가 계속되고 있어 대화자 녹음이 아닌 감청으로 볼 여지가 있음
- E 위원 : 민원인이 문제제기한 사항을 보호원이 확인을 할 수 없었고, 보호원이 임의로 심의대상을 선정하여 심의 요청한 것으로 민원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음
보호원이 채팅방에 접속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 부분을 직권으로 증거 수집하였는데, 이 경우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차원에서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것이며, 제1분과위원회에서

도 부결로 판단하였음

- 박성호 심의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72590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보호원의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에 관한 쟁점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며, 본 건에서 핵심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다른 안전건에서 계속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티스토리' 이용자 '▲▲▲'가 일본 애니메이션 '야마노스스메 추억 선물' OVA(Original Video Animation)의 우리말 자막 smi 파일을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임
본 건 애니메이션 자막파일의 원 저작물은 일본어로 작성된 대본이고, 이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함
애니메이션 자막파일의 무단 제공은 원 저작물(일본어 대본) 저작권자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가 심의대상 게시물이 제공된 게시판 또는 사이트에 있는 동일 복제·전송자가 올린 다른 게시물이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심의"대상"이 아닌 게시물은 시정권고 심의에서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여부에 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저작권침해 상습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동일 게시판 또는 사이트 내 복제·전송자가 올린 다른 게시물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한편 원 저작물 전체 분량의 자막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른바 '전유형'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보다는 제35조

의3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임

심의대상 아닌 게시물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를 추가 검토한 이유는 게시물 자체만 보고 심의하는 분과, 블로그 게시판까지 고려하여 심의하는 분과가 있고, 과거 전체위원회에서 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이 다수 있으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해야한다는 발언이 있었기에 위원회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해 보여서임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 동영상을 캡처한 화면과 자막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올린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캡처화면과 자막파일이 게시되어 있다고 답변함
- A 위원 : 검토보고서 내용 중 이용자들이 불법복제물 감상을 목적으로 자막파일을 다운로드 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언급이 있는데 어디에서 확인가능한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댓글에 해당 내용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댓글을 제시하면서)smi 파일이기 때문에 우리말 파일 그 자체만으로는 외국어 학습 등의 효용이 없고 애니메이션 영상과 결합해서 이용될 것으로 보임
- A 위원 : 기존 전체위원회에서 단순 자막이 아닌 smi파일 관련해서 시정권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기억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지난 자막 관련 심의에서 동영상 재생플레이어와 연동하여 smi파일 자막을 이용할 수 있었던 안건이 있었음
- B 위원 : 합법시장에서 판매되는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지 않아도 자막이 있기 때문에 복제물을 감상하는데 도움이 됨
자막이 없으면 외국어로 된 복제물을 감상하기 힘들
- C 위원 : 2분과위원회에서 영어자막이나 영어대본은 별도의 합법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글자막이나 영어자막 등의 무단배포는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의 불법적인 유통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결했고, 일반적인 상업 영화의 자막 파일에 대해 가결하지는 않았음
- D 위원 : 영어교육용으로 활용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 A 위원 : 과거 2분과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이 smi파일이었는지 질의함
- C 위원 : 동영상 플레이어에서 재생 가능하지만 smi파일도 기본적으로 텍스트 파일임
- B 위원 : 중요한 것은 smi파일에는 싱크가 있음
- C 위원 : smi파일에는 싱크 정보가 있으며, 2018년 제5회 전체위원회 안건과 본 건과 사이에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됨

- D 위원 : 영어 대사와 비교했을 때 일본 애니메이션에는 요즘 일본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유행어, 줄임 말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일본어 교육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E 위원 : 미국 헐리우드 영화사에서 smi파일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었음
smi파일은 동영상에서 자막을 쉽게 볼 수 있게 기술적으로 만든 것으로 단순히 교육용보다는 불법 복제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가결 의견임
- A 위원 : 2017년 전체위원회에서 자막파일을 처음 논의한 사안은 동영상과 연동하기 위한 자막파일이 아니라 일본 애니메이션 대사를 단순 번역한 것으로 기억함
그 당시 안건으로 상정된 자막은 번역된 자막 자체만 개인 블로그에 올려둔 것으로, 2차적저작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결했음
그 후 동영상을 연동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자막 smi파일에 대해 합법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음
본 건도 자막 파일의 게시 목적과 합법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함
- D 위원 : 과거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사안에 비추어 볼 때 본 건은 시정권고를 가결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분과위원회 별로 심의대상이 아닌 게시물을 고려하는 정도나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여 이번 기회에 정리할 것을 제안함

- E 위원 :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안건을 검토하다보면 심의대상 게시물 아닌 게시물 대부분이 불법복제물인 경우가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외의 다른 게시물도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회의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심의 특성상 해당 건에 대한 것만 심의할 수밖에 없음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에 대한 큰 거리가 있는 것 같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포함되어 있는 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이 올라가 있다면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 게시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임
 만약 심의위원회가 할 수 없다면 보호원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서 불법복제물이 올라간 게시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가 보호원에 요청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D 위원 : 현재 논의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있는 게시판이나 블로그에서 다른 불법복제물을 발견했다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것임
 위원님은 심의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복제물도 함께 시정권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현재 논의와 다른 안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 E 위원 : 제가 내용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음
- A 위원 : 상습성은 원칙적으로 행위자를 중심으로 봐야함
 심의안건 게시물로 한정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맞지만 상습성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법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함

A라는 행위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지만 상습성을 고려할 때 게시판에 올린 다른 불법복제물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2설을 지지함

- 성원영 전문위원 : 1설은 심의위원회가 준사법기구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이론이나 형사소송에서 공소사실의 특정과 같이 심의대상에 한정해서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2설은 행정기관의 관점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입장임
제가 심의대상물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 심의위원회도 심의대상물 이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D 위원 : 게시물 단위로 평가하지만 심의대상 게시물만으로는 심의·의결하기 모호할 수 있으므로 게시물 이외에 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이 많이 업로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등 배경을 고려할 수 있음
학설대립은 1설과 2설로 나뉘질 수 있지만 실무상 운영은 항상 절충적인 쪽으로 귀착되는 경우가 많음
배경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E 위원 : 민원인이 사이트에 대해 신고한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아닌 해당 사이트를 신고했다고 답변함
- E 위원 :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게시물은 사이트 내 게시물 중 하나를 보호원이 선정한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심의대상 게시물을 특정해서 심의를 요청했다고 답변함
 심의위원회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을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보호원이 심의를 요청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데, 보호원이 민원사무처리의 일환으로 심의위원회에 시정권고 심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됨
- A 위원 : 불법복제물 2~3개 올린 것을 상업적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100개 이상 올린 것을 상업적으로 봐야하는지도 의문임
- D 위원 : 1설이 원칙적으로 옳아 보임
 1설을 원칙으로 취하되, 게시물만으로 심의·의결하기 모호하다면 불법복제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있는지 등을 사안에 따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적절하게 배경적인 고려사항이 참작되면 무방할 것으로 보임
- A 위원 : 시정권고할 때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겠지만 상습성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 하나이므로, 사안에 따라 상습성이 부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B 위원 : 공정이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2설을 많이 따르는 경향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이외의 게시물을 고려한다고 심의대상 안건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자는 것임
- D 위원 : 1설을 원칙적으로 취하고 사안 해결의 명확성을 위해 경우에 따라 2설을 고려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 공정이용 판단의 한 요소가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임
과거 헐리우드 영화 배급사들이 우리말 자막 제작자들을 고소했을 때 피의자들의 주된 변소내용이 공정이용이었는데, 취미로 올린 자막 파일이 해당 영화와 대체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본 전문위원의 검토는 영화 복제물과 자막파일이 결합해서 영화의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았음
자막파일의 경우 수요를 대체하는 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법률가마다 시장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다름
어떤 변호사는 자체 제작한 우리말 자막파일이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영화가 아닌 자막파일의 합법시장을 전제로 한 것 같음
- A 위원 : 경우에 따라 확일적으로 정할 수 있을지 의문임
심의위원회도 자막파일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의결하고 있음
- D 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 공정이용에 관한 판단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함
영상과 자막파일이 결합하게 되면 시장에서 대체효과가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E 위원 :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로 의결되면 심의대상 게시물 1건에 대해 시정권고하게 되는데 민원인한테 결과에 대해 회신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에서 민원인에게 답변을 하면서 심의결과를 설명한다고 답변함
- E 위원 : 민원인은 사이트에 불법복제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 하나만 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민원인은 보호원이 '뭐하는 기관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팀에서 1차적으로 답변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민원인은 보호원이나 문체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심의를 직접 청구한 것은 아님
 민원인이 심의위원회나 심의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호원이 민원처리를 위해 심의를 요청하는 것임
 보호원이 민원인이 특정한 사이트나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 제공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건에 대해서도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심의를 요청하고 있음
 예를 들면, 네이버 밴드에서 불법복제물 공유가 심각하다고 보호원이 판단하여 심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심의위원회는 분과별로 돌아가면서 심의를 하고 있음
- D 위원 : 심의위원회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절차를 이용해야 할 것임
- E 위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약적인데 외부에서 원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모두 충족할 수 없음

콘텐츠 관련 권리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외의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사이트에 불법복제물이 올라가 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라고 하듯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왜 존재하는 것이냐'라는 성토가 있을 수 있어 우려스러움
심의위원회 역할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C 위원 : 2018년 전체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자막과 본 사안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함
가결로 의결한다면 2018년 전체위원회의 결론과 달라지므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A 위원 : 2018년 전체위원회에서는 본 건과 사안이 달랐던 것으로 기억함
- D 위원 : 당시 사안은 자막과 영상이 연동되는 것이 아니었음
자막파일에 관한 사안은 맞지만 당시의 심의에서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기억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심의위원회에서 자막파일의 여러 유형을 다뤘음
가장 많이 유통되는 자막형태는 smi파일이며 심의·의결에 따라 보호원의 모니터링 방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됨
- A 위원 : 지난 전체위원회에서 자막을 번역한 안전에 대해 부결로 의결한 것이 맞는데 본 건과 동일한 형태가 아니라 개인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부결한 것으로 기억함

- C 위원 : 지난 전체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자막에 대한 안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정현순 전문위원 : (2018년 제5회 전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시하면서)2017년부터 자막파일에 대한 심의했고, 자막만 게시된 경우 대체로 부결로 의결하였음
자막과 동영상이 함께 올라갔거나 게시된 자막이 영화개봉 예정작 일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결하였음
당시에도 자막만 게시된 경우였고 드라마 자막파일을 자막공유 사이트에 올린 사안이었음
주로 미국드라마 자막파일을 올린 안전들이었고, 한 게시자가 여러 건의 자막파일을 올렸으나 기존 심의위원회 입장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부결로 의결하였음
본 건은 자막파일만 게시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심의했던 내용과 동일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자막파일만 올린 경우에도 개봉예정작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결했기 때문에 본 건도 자막파일만 게시하였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결할 경우 종전 심의위원회 입장을 변경하는 것을 아니라고 생각함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일본 애니메이션 자막을 번역하여 올린 안전과 관련해서 검토보고 원안은 전문위원이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제시하였는데, 자막파일만 게시한 것이고 가결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부결될 수 있음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 본 건과 기존의 자막파일 의결결과에 대해 일관성을 갖추

는 것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던 것 같음
가결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음

- C 위원 : 본 건에 대해 가결한다면 완결자막이 230개, 미완결자막이 1,200개로 대략 1,500개의 자막파일이 존재하는데 1,500개 자막파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가결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유럽에서 최근 이른바 ‘fan-subbing’ 또는 ‘fan-subtitle’이 문제된 판결들이 나왔는데,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하급심 법원들은 팬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자막을 만들어 공유한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 본문에 1,644번째 자막이라고 되어있어 2설의 요소를 반영하여 가결로 검토하였음

- A 위원 : 과거 전체위원회에서 번역 사례도 논의했지만 우리말 번역이 제대로 된 것도 있지만 정식 번역 내용과 다르게 잘못 번역된 것들이 상당 수 있었음
번역했다는 표시만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음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 대조하는 작업을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맞게 번역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지 않았는데 게시자가 직접 번역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고려하여 심의하였음

- 성원영 전문위원 : (smi자막파일을 텍스트파일로 보여주며)싱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동영상과 결합할 때 그 시간에 자막이 나오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 영화를 잘 볼 수 있도록 smi형태로 제작함
기존의 자막파일 심의는 번역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방조에 대한 기술적 검토 부분이 충분하지 않아 아쉬웠음
자막을 smi파일로 만들었다면 처음부터 불법복제물 감상을 돕기 위해 자막을 만들었다고 봐야 하고, smi파일 아닌 자막과 달리 볼 필요가 있음
기술적인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 D 위원 : 2018년 10월 전체위원회 결과와 본 건이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님
이번 안건은 애니메이션 자막만 게시된 것이지만 동영상하고 상호연동되어 이용할 수 있고, 불법으로 번역하여 올린 저작물 개수가 완성본과 미완성본 합해서 약 1,500건 정도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임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영상 없이 자막파일만 게시하였으나 가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

- F 위원 : 약 1,500개의 자막파일이 게시된 사정이 본 건의 가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함
가결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만 불법복제물이 많지 않은 경우에 다시 한 번 판단해야하는 상황이고, 가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가결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음

- D 위원 : 불법복제 자막파일이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는지를 심의에서 고려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임
이 부분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심의대상 게시물 자체에 한해야 한다는 1설을 원칙적으로 취하되, 경우에 따라 판단이 모호할 경우에는 심의대상 게시물 이외에 배경이 되는 사이트 또는 게시판에 불법복제 전송 게시물이 어느 정도 되는 지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2설이 보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이번 안건도 사안자체만 놓고 보면 어떻게 결정할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배경적인 요소로 게시판에 불법번역해서 올린 자막파일 건수를 고려할 수 있음

- F 위원 :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자고 했던 이유는 블로그 이용자가 자막을 올릴 때 취미로 감상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기재했고 일본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일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순수한 목적으로 만든 것 같음
smi파일을 만들면서 기술적인 것을 이용했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텍스트파일로 타이핑만 하면 되는 수준이므로 자막 만드는 것이 일본어를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도와주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함
블로그에 게시된 자막파일의 제목을 보았을 때 유명한 애니메이션은 아님
그런 측면에서 가결로 의결하기에 주저되어 전체위원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안건을 회부하였음

- B 위원 : 번역만 하는 것과 smi파일을 만드는 것을 비교하면, 번역한 것을 smi파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상이 나올 때 정확한 시간에

나와야하므로 유심히 관찰해서 작업해야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됨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smi파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님

- A 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달린 댓글을 확인했을 때 불법복제물을 감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이용된 모습이 보이고, 이러한 증거자료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F 위원 : 자막파일을 다운받은 사람이 불법복제물 영상을 다운받은 후 매칭하여 감상할 수 있겠지만, 자막파일을 올린 게시자는 그렇게 해서 불법복제물을 감상하라고 하지는 않았음
방관 또는 방조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의견을 제시함
- E 위원 : 자막파일을 올린 사람이 선의의 목적으로 게시했다라도 심의위원회에서는 판단할 때 선의의 의도까지 반영할 필요는 없음
자막파일이 있으면 불법복제물을 이용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야 함
- F 위원 : 지난 전체위원회에서는 자막파일에 대해 부결했는데, 이번 사안은 가결하자는 것임
- D 위원 : 지난 전체위원회 안건은 1~2개의 자막만 올라가 있었고 이번 건은 완결자막이 230개, 시리즈가 미완결된 자막이 1,253건임
- F 위원 : 대부분 2012년, 2013년에 방영된 예전 애니메이션이고 완결된 자막도 2018년 애니메이션임

- D 위원 : 일본 애니메이션의 합법시장에서 유통되는 저작물에 한글 자막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국내 권리자로 보이는 주식회사 ♡♡♡♡♡♡♡♡ ♡와 통화를 하였는데, 합법 저작물에는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음
- G 위원 : 댓글 내용에 비춰 보면 이용자들이 불법복제물을 감상하기 위해 자막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했는데, 방금 정식 버전에 우리말 자막이 있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됨
- 성원영 전문위원 : 검토보고서 21쪽의 우리말 자막 버전에 대한 권리부분은 국내 수입된 합법 저작물에 대한 것이며, 검토보고서 23쪽의 데드카피, 자막 없는 것은 일본에서 방영된 영상에 대한 내용임
- G 위원 : 일본 애니메이션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블로그에 게시된 자막과 결합해서 감상한다는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그렇다고 답변함
- F 위원 : 3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2018년 1월 26일에 마지막으로 자막을 게시하였고 그 이후에 올라온 자막이 없었음 미완결 자막을 보면 2013년이며,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로 의결해서 1년 전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 중단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임

- A 위원 : 업로드 시점을 기준으로 시정권고 여부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음
 결과적으로 불법복제물을 감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블로그 이용자가 자막파일을 제공하였고, 지금도 계속 제공되고 있음
 심의위원회에서는 카페, 블로그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불법복제물을 이메일로 보내주는 게시물도 시정권고 가결하고 있음
 업로드 날짜로부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불법복제물 감상을 위해 자막파일을 제공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고려해 가결해야한다고 생각하며, 가결한다고 하여 기존의 자막에 대한 의결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일본 애니메이션 자막을 부결한 사안에서는 자막파일이 별도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블로그 내에서 자막이 나열만 되었음
 안전별로 사실관계를 따져서 심의해야 함

- F 위원 : 가결하는 것에 이의는 없지만, 영어공부를 위해 영어 DVD를 구입하였고 영어자막을 찾아본 경험이 있음
 외국어를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많은 도움이 됨
 불법복제물을 다운받은 후 자막과 결합해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합법저작물을 구매하고 자막만 다운로드 받아 이용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 A 위원 : 위원님은 자막과 불법복제물이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는 의견인지 질의함

- F 위원 : 그렇다고 답변함

기본적으로 블로그 이용자는 취미용 또는 감상용으로 자막파일을 게시했다고 밝혔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함

- C 위원 : 자막파일에 대한 시정권고에 그 동안 소극적이었던 것은 2차적저작물이고 직접 번역했다면 창작적 요소가 있기 때문임
이번 사안도 본인이 직접 번역했다고 밝히고 있어 시정권고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인데, 그 부분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생각함
- F 위원 : 블로그에 게시된 애니메이션 제목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음
- A 위원 : 전체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뤘던 자막도 4건 정도 되는 것 같음
사안마다 달라서 획일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사안마다 판단하여 의결해야 함
이번 사안은 불법복제물을 감상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F 위원 : 기존 자막과 이번 자막 안건과의 공통점은 있음
다만, 이번 자막 안건에 대해 가결한다면 기존 자막과 차별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리해야하는데 여전히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음
- D 위원 : 수량이 많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차별성임
- F 위원 : 기술적인 부분도 기존 안건과의 차별성임

- C 위원 : 기존 심의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간과했음
- A 위원 : 기존 심의에서 기술적인 것과 smi파일 연동되는 것을 고려하여 가결한 것이 있음
- C 위원 : 기존 심의에서는 쟁점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자막을 일반적인 번역물로 판단했다고 생각함
- F 위원 : 일반적인 번역물은 부결하는 것이 맞으며, smi파일이 오래 전부터 문제되었음
- B 위원 : 자막파일 유무에 따라 불법콘텐츠 유통에 상호작용한다고 생각함
자막파일이 없다면 불법복제물 영상을 구해서 감상하지 않을 것임
- C 위원 : 전문위원이 차이점을 기록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D 위원 : 기술적 처리와 관련된 것이 명시가 되면 될 것 같음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자막과 관련하여 가결인지 부결인지 거수하는 방안을 제시함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애니메이션 자막 번역 안전에 대해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하기로 함
가결 5명(B 위원, E 위원, G 위원, A 위원, D 위원), 부결 2명(C 위원, F 위원)으로 출석위원 2/3이상 가결의견으로 안전번호 제

2019-72591호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19-72592호, 72593호는 저작권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프레임 링크를 통해 해외 '리치사이트' 화면을 보여준 사안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경과를 제시하면서)참고로 민원인은 방송통신 위원회에 특정 URL을 지정하여 민원을 제출하였고, 그 후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되어 영화, TV 저작권 침해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성인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원처리 업무를 하고 있음
(심의대상 사이트의 메인화면을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19-72592호는 스포츠 경기 일정, 승률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사이트인 '☆☆☆☆☆☆' 내 게시물(심의대상 게시물)이 프레임 링크(framing link)를 통해 해외 사이트인 '□□□□□□(●●●●●●●●.com)'을 보여주는 사안임
프레임 링크를 통해 보이는 '□□□□□□'의 메인화면에는 약 140개의 영화 포스터가 있는데, 이용자가 영화 포스터 하단의 영화명을 클릭하면 개별 영화(한글 자막 있음)로 연결되는 링크가 설정된 '□□□□□□' 내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음
(심의대상 사이트의 메인화면을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19-72593호는 '☆☆☆☆☆☆' 내 게시물(심의대상 게시물)의 프레임 링크(framing link)를 통해 해외 사이트인 '◆◆◆◆(◇.◇◇◇◇◇◇◇◇◇◇.◇◇◇◇◇)'의 '방영중 드라마' 항목의 첫 화면이 보이는 사안임
프레임 링크를 통해 보이는 '◆◆◆◆'의 화면에는 약 86개의 드라마가 있는데, 이용자가 드라마명을 클릭하면 개별 드라마로 연결되는 링크가 설정된 '◆◆◆◆' 내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프레임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 이용하기 위해서는 ① 아래 ②번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연결정보) 등 약 140개 링크(연결정보)를 설정한 게시물(□□□□□□/‘◆◆◆◆’), ②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 ③ 영화 불법복제물(해외 스트리밍 사이트) 순서로 이동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 주소에는 변동이 없음 즉 불법복제물을 기준으로 보면, 직접링크(②번 게시물), 직접링크(①번 게시물), 프레임 링크(심의대상 게시물) 순서로 링크가 설정되어 있음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19-72592호, 72593호 프레임 링크를 통해 해외 ‘리치사이트’를 보여주는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프레임 링크를 통해 보이는 해외 ‘리치사이트’의 게시물들은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게시한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국내 사이트인 ‘☆☆☆☆☆’ 내 게시물(심의대상 게시물)의 프레임 링크로 연결되는 해외 ‘리치사이트’의 이용자는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심의대상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대답함
- D 위원 :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 대해 확정적 증거는 없으나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답하는 것 같음
- B 위원 : 위 안건과 별개로 방심위가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 중에 보안접속 버전인 https(주소창의

https://~)까지 접속차단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이트 운영자들은 접속차단 회피를 위해 동일한 사이트에 대하여 URL을 조금씩 변경하거나,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하여 링크의 링크, 플랫폼 등으로 만들어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임

- E 위원 : 국내 사이트인 '☆☆☆☆☆' 운영자와, 해외 '리치사이트' 운영자는 다른 것으로 보임

본 안건들의 해외 '리치사이트'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로 보이는데, 국내 사이트인 '☆☆☆☆☆'에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하여 사이트 안에 해외 '리치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 E 위원 의견에 동의하며, 그것과 별개로 해외 '리치사이트'도 접속차단이 되면 URL을 변경하여 운영할 것으로 생각됨

- E 위원 : 해당 안건은 제1분과위원회에서 전체심의위원회에 부의하였는데, 본 안건은 ① 국내 사이트 '☆☆☆☆☆'(민원인이 신고한 화면)에서 ②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해외 리치사이트)로 이동되고 ③ 저작물을 클릭하면 ④ 해당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이 실행 됨

과거 ② 화면과 같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가 설정된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에 대해서는 가결하였지만, ① 화면과 같이 프레이밍 링크를 통해 해외 '리치사이트' 화면을 보여준 건에 대하여는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부의하게 되었음

- D 위원 : 전문위원 검토 보고 안건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시정권고의 대상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 C 위원 : 가결의견에 찬성하되, 논리 구조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임
전체 저작권침해 방조로 봐서 '불법복제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서울고등법원은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행위의 민사 방조 책임을 인정하면서, 링크 행위가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음
임베디드 링크가 문제된 고등법원 판결의 논리가 프레이밍 링크가 문제되는 본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임
본 건에서도 국내 사이트인 '☆☆☆☆☆'에서 불법복제물이 직접 전송되지는 않고, 공중의 이용제공의 여지를 확대하고 있을 뿐임
국내 사이트인 '☆☆☆☆☆' 운영자와 해외 '리치사이트' 운영자가 동일인이라면 직접 방조가 될 수 있겠지만 동일인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관계로 전송권침해 방조의 방조(간접방조)로 검토하게 되었음
- C 위원 :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전송권침해 간접방조인데, 심의대상 게시물을 '저작권 침해 정보'로 보지 않고 전송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 불법복제물 그 자체의 전송은 없다고 보고함
- C 위원 : 서울고등법원 판결에도 링크자체 밖에 없는데 불법복제물

로 보고 있음

- G 위원 : C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방조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고 전송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 D 위원 : C 위원은 ① 국내 사이트 '☆☆☆☆☆' 자체가 복제 또는 전송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니까 방조의 방조라도 바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의견이고, 전문위원은 방조의 방조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확실상 문제 등 논의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저작권 침해 정보에 포함시켜 논의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으로 사료됨
그럼 점에서 보면 일체 다른 논의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검토보고를 '불법복제물등'으로 한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방조의 방조에도 해당되고, 사이트 자체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것 같기도 함
양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면 심의대상 게시물은 가결하는 것이 명백해 보임

- E 위원 : 기존 심의 안건들은 게시물단위 한 '건'에 대한 심의였는데, (심의대상 게시물을 가리키며)예컨대 금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보이는 '롱 리브 더 킹:목포 영웅'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을 하고, '악인전'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을 하여야 하는데, 금번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런 저작물이 모여 있는 페이지로 기존 심의했던 게시물과는 다른 사안으로 보임
이런 페이지에 대해서도 삭제 또는 전송중단을 해야 하는지 의문임

- D 위원 : 본 안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저작물 '건' 별로 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국내 사이트인 '☆☆☆☆☆'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이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프레이밍 링크를 통해 보이는 해외 '리치사이트' 메인화면이라고 대답함
쉽게 말하자면, 직접링크를 클릭해 보면 클라우드에 수천 건의 불법 복제물이 있었던 사안과 비슷함

- D 위원 : 프레임 자체가 저작권 침해의 정보라고 보는 건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그렇다고 대답함

- E 위원 : 다른 사이트에서도 특정한 메뉴를 클릭하여 여러 불법복제물들을 링크 시켜주는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하면, 게시판 자체를 시정권고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외 '리치사이트'는 오늘 심의에서 심의 대상이 아니고, '☆☆☆☆☆'가 심의 대상임
그리고 게시판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문체부장관이 시정 명령으로 게시판 정지를 할 수 있음
게시판이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정의에 따라 이용자가 게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고 게시는 저작물 목록은 모두 동일인이 올린 것이므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게시판은 아닌 것으로 보임
정리하면 해외 '리치사이트' 메인화면에는 약 140개의 영화 포스터가 있어서 게시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웹 위치 정보의 목록이라

고 생각하시면 됩

링크라고 하지 않고 웹 위치 정보라고 표현한 이유는 포스터를 클릭하면 동일 사이트 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기 때문임

- E 위원 : 충분한 답변이 되었음

- G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 사유가 단순히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보기보다는 방조의 방조의 논거로 임베디드 판결처럼 불법복제물 전송의 용이성을 강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 D 위원 : 개인적으로 방조라고 하는 부분도 서술하고 프레이밍 자체가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양쪽을 포괄하면 후속 사안으로 유사한 사안이 있을 때 적용 할 수 있다고 생각됨

- E 위원 : 방조라고 하는 것은 국내 사이트 '☆☆☆☆☆' 운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올리고 운영자가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이 방조인데, '☆☆☆☆☆'가 이용자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 일부러 해외 '리치사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방조가 아닌 적극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자로 보임
따라서 방조로 이룬 구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됨

- D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 운영자와 해외 '리치사이트' 운영자는 서로 다른 사람일 수 있음

- C 위원 : 전반적으로는 고의 방조로 보임
- H 위원 : E 위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이런 경우 국내 사이트 '☆☆☆
☆☆' 운영자와 해외 '리치사이트' 운영자가 보통 동일인인지 질의함
- E 위원 : 구글과 같은 인터넷검색 사이트에서 해외 리치사이트를 검색하면 별도의 독립 사이트로 나옴
국내 사이트 '☆☆☆☆☆'는 스포츠 경기 일정, 승률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데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해외 '리치사이트'를 프레이밍 링크로 제공한 것으로 보임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안전번호 제2019-72592호, 72593호 프레이밍 링크를 통하여 해외 '리치사이트'를 보여주는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가결 의견하고, 가결 사유는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72594호는 저작권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사설서버 게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다음(daum) 카페의 이용자가 게임 캐릭터를 전송한 사안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경과를 제시하면서)참고로 민원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였고, 그 후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되어 게임 캐릭터 저작권 침해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상표권 침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민원처리 업무를 하고 있음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민원인은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캐릭터 원본 이미지, 프로그램 등록증, 상표자료(총 37페이

지) 등을 제출함

(관련 판례를 제시하면서)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 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사설서버 게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의 첫 화면인데, 게시판을 포함하고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심의대상 게시물을 삭제하게 되면 게시판은 물론 해당 카페 전체가 차단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게시판 서비스 정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 따라 6개월 이내 기간으로 명령하여야 하고,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을 근거로 시정권고를 할 수는 없음

사이트 전체의 차단은 현행 저작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정조치임을 설명함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19-72594호 게임 캐릭터의 저작물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함

- G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가리키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사설서버 게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의 첫 화면인데, 심의대상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중단 할 경우 해당 카페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는 결과가 발생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제3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음

아울러 해당 카페에서 심의대상 게시물 상단의 캐릭터 이미지만 분리하여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시정권고가 가능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B 위원 : 본 안건의 이미지 부분을 캡처해서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E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해당 이미지 저작물이 관리자의 캐릭터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캐릭터 부분을 클릭하여 속성에 들어가면 이미지 명을 알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상단의 캐릭터 부분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서)마우스 우클릭 제한으로 정보를 알 수 없음
- E 위원 : 그렇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해당 이미지 부분이 저작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미지 삭제 또는 이미지 변경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B 위원 : 본 안건은 시정권고 집행 측면에서 해당 부분을 특정할 수 없음
금일 논의한 안건번호 제2019-72590호 네이버 밴드 단체채팅방에서 전송된 MP4 파일 역시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위 안건과 유사한 사례인 것 같음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해당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과거 단체채팅방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집행 과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채팅방 내 파일을 특정하여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들의 채팅방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카페의 공지사항을 보여주면서) 위 사이트는 사설서버 게임 회원을 모집하는 카페로 보이고, 텔레그램 메신저 가입을 유도하고 있음
민원인 회사와 통화를 하였는데 사설 서버 게임과 관련하여 다각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음
- B 위원 :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과거 시정권고 집행에 있어 특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영상물과 반주음악(MR)을 함께 사용한 안건에 대하여 반주음악(MR)만 특정할 수 없어 대응하지 못하였던 것 같음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보임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안함
- B 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함
- E 위원 : 동의함
- A 위원 : 동의함
- C 위원 : 동의함
- H 위원 : 동의함
- G 위원 : 동의함

- F 위원 : 동의함

- 박성호 심의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안전번호 제2019-72594호는 원안대로 경고의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19-72591호~72593호는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19-72590호는 부결, 안전번호 제2019-72594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만하는 것으로 의결함 ”

5. 논의안건

○ 제1호 : 불법복제물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불법복제물 배포에 관한 정보(청약의 유인)를 제공하는 게시물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며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라야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저작권법 제133조의3 조문의 입법 목적은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둘러싸고 권리자 등과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불법복제물을 삭제 또는 전송 중단하도

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건전한 저작물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위 조문은 불법복제물이 온라인에서 전송되는 경우에 한해 보호원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우리 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이 복제·전송되는 경우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시물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저작권침해가 이루어지는 사안에서 보호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보호원과 심의위원회가 저작권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번 전체심의위원회에서는 불법복제물의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함

- A 위원 :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볼 여지가 있지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면 진품 여부 등의 확인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실제로 특허청에서 시정권고를 할 때는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상태만 보고 시정권고를 하지 않고 오프라인상에서도 진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거친 후 시정권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상품을 구입하여 진위여부를 판별하지 않더라도 게시물 자체만 보더라도 불법복제물임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예컨대 불법복제물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정품 구매 시 150

만원인데, 카피본은 10만원에 구매 가능하다'는 취지로 게시함

- D 위원 : 논의하고자 하는 사례는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오프라인상에서 USB 등에 불법복제물을 수록·배포하는 방식인 것으로 이해함

현재 불법복제물의 유통 양상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사안도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입장임

특허청의 시정권고 사례는 온라인 사이트 자체에서 짝퉁 상품이라고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병행수입 제품일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F 위원 : 기본적으로 전문위원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동의함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부분이어서 개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A 위원 : 법리적으로는 불법복제물인 것이 명백하다면 시정권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함

- F 위원 : 불법복제물(짝퉁)인 것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안이 심의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부분임을 선언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시정권고 하는 과정에서 진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기관이나 기업 등에 진품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생각함

- H 위원 : 온라인상에서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는 고객에게 불법 복제된 음악이나 영화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음
오프라인 매장의 고객 유치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판촉활동을 한 것으로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새로운 불법복제물 유통 양상이 발생한 것임
전문위원이 바로 그 점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이해됨
현재 저작권 침해 양상은 단순하지 않음
심의위원회에서는 저작권법 133조의3에 의거,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
- A 위원 : 본 사안 시정권고 심의의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보호원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정권고를 하는 것에 동의함
- E 위원 : 10여 년 전 일본에서는 데이터를 얼마나 쓰는지에 따라 네트워크 사용료가 차등 부과되었기 때문에 웹사이트 등에서 게시글을 보고 게시자에게 송금하면 CD에 클래식 음악을 담아 우편으로 보내주는 등의 사례가 보편적이었음
현재 usb 용량이 커지고 싼 금액에 구입이 가능해져 소프트웨어나 음악을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이 보다 더 쉬워짐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새로운 불법복제물 유통 양상을 방치하면 불법복제가 횡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는 것에 동의함
- F 위원 : 보호원 내부에서도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의 '전송'이 이루어진 것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는 '정보'만 제공되고 실제 불법복

제물 제공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도 시정권고 대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음

- G 위원 : 동의함

먼저 보호원 온라인대응팀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시정권고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을 거친 후 현장조사팀이 불법복제물을 수거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상황임

- C 위원 :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불법 복제한 캐릭터 상품의 경우 저작권보다는 상표권이 문제가 되는 사안임

상표권이 문제가 되는 사안의 경우 라이선스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준하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호원에서 조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함

- D 위원 : 캐릭터는 상표로서의 성격이 있을 수 있지만 라이선스 계약 없이 만들어서 팔게 되면 그것이 위조품이 되는 것임

아무리 영터리로 만들어도 라이선스가 있으면 정품임

라이선스가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 권리침해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판매자에게 라이선스가 있는지 확인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C 위원 : 물품을 실제로 구매를 해서 침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소명을 하라고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D 위원 : 상품구매 요청 사이트에서 이메일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권리자가 직접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상의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고 있음
권리자의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온라인에 게시된 불법복제물 판매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중단 할 의사를 밝혔으나 그에 대해서 보호원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만약 금번 심의에서 심의위원회 입장이 정해진다면 유사한 안건을 심의 요청할 수 있을 것임
- C 위원 :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사안의 유형에 따라 조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수 있음
- D 위원 :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유의해서 처리해야 할 것임
예컨대 병행수입품은 확인절차가 굉장히 복잡함
- A 위원 : 마찬가지로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심의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세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D 위원 : 구체적인 업무 절차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임
- E 위원 : 심의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온라인대응팀이나 현장조사팀에 전달을 해서 심의를

요청하게끔 하는 프로세스가 바람직할 것임

- 박성호 심의위원장 : 논의안건 제1호 불법복제물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심의위원의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함
일부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사실관계 조사할 시 유의사항은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직원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제2호 : 저작권 보호 심의기능 강화 방안

- 정현순 전문위원 : 시정권고 심의는 영화나 음원, 드라마 등 단순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시정권고 제도 도입 취지에 충실하게 운영이 되어왔음
보호원이 설립된 이후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먼저 보호원 설립 이후 권리자뿐 아니라 일반인에 의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한 민원 신고가 증가하고 있음
민원인의 신고 등에 따른 심의나 정보제공청구와 관련된 심의는 민·형사소송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심의 내용에 따라서 저작물성 판단 등 실체 판단이 필요하거나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 성격이 강한 경우가 많음
두 번째로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심의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심의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하였으며,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심의의 공정성·중립성 강화 요구가 높음

세 번째로 이 개정안은 심의위원의 수를 20인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심의위원 수가 대폭 증원될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지원을 위해서 보호원 사업팀이 아닌 사무국 또는 전문위원실 같은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고, 단순 불법복제물에 대한 심의에서 벗어나 저작물성이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등에 관한 실체 판단 등이 필요한 분쟁 사안 등에 대한 심의를 확대하고, 심의위원 증원 등에 대비하여 심의 전용 공간 및 휴게 공간을 확보하는 등 저작권 보호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

- E 위원 : 먼저 심의 공백 기간에 대한 건의를 하고자 함

현재 연초에 2개월 정도 심의 휴지기를 가지고 있음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재택근무 요원들의 모니터링이 중단되기 때문인데, 이를 보완하여 상시 심의업무를 할 수 있게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개인적으로 1, 2월은 불법복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심의기능이 정지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음

두 번째는 심의개최라든가 위원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 저작물 보호를 우선하는 쪽으로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저작권보호원이 권리자 또는 저작물을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보호요청 목록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의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권리자 단체나 기업이 보호원에 적극적으로 보호 요청을 한 건에 대해 보호조치가 이뤄지는 결과를 전달하면 보호원과 요청자간의 상호소통이 원활해지고 보호원의 협력자로 바뀔 수 있으므로 보호원의

보호 업무나 심의 업무가 이렇게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심의팀에서 심의를 지원하면서 시정권고 집행은 같이 해왔음

최근 보호원 업무조정을 통하여 시정권고 집행 업무는 온라인대응팀에서 하게 되어 심의팀은 심의 지원에 집중하고자 함

먼저 심의 공백부분과 관련하여 보호원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재택모니터링 요원들의 근로계약이 1년 단위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임

현재 ICOP시스템을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심의 공백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권리자로부터 보호요청이나 피드백을 받는 부분은 현재도 온라인보호국에서 하고 있으므로, 위원장께서 허락해 주시면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박성호 심의위원장 : 담당 국장 설명을 듣기로 함

- 정석철 온라인보호국 국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요청은 주요 권리자 단체로부터 받고 있고, 권리자가 보호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종합상황실과 연계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고 있음

특히 저작물의 긴급대응은 주로 권리자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모든 시정권고 심의 대상 안전이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서 정하여지는 것은 아님

시정권고는 권리자 요청에 의해서만 시행되는 행정조치가 아니고,

고려하여야 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으며 심지어 권리자가 보호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음

- C 위원 : 먼저 심의위원 수가 확대되는 것과 연계되어 전문위원 수 자체를 늘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두 번째로 현재 심의는 주로 웹하드에 대한 시정권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연말에 통계를 내서 특정 웹하드 업체들의 침해 현황을 파악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정현순 전문위원 : 현재 통계는 내고 있지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통계 활용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H 위원 : 사실 심의하다 보면 유사한 패턴의 심의가 많음
밴드 같은 경우는 불법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상황에 적절히 대처를 못 하면서 기존의 것만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새로운 유형의 불법복제물에 대해 대응방안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 B 위원 : 풍선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해결 방안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못하고 있는 수준이고 국내 서버에 기반을 둔 웹하드 등이 해외 서버로 넘어가면 실제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 수 있음
해외에 기반을 둔 서비스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후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I 위원 : 불법복제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 대해 심의하고 집행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작년 밤토끼 사태를 예로 들면 현재 밤토끼2가 있어 우회해서 접속할 수 있음
- 접속차단을 하기 위해 수많은 경찰, 방통위,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노고가 물거품이 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불법복제물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집행방법은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 기능과 방통위에서 하는 접속차단 기능을 일원화하여 불법복제물 전송중단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국가적인 통제 방안 중 하나로 금융 거래정보 등을 금감위 등에서 추적하여 수익을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불법복제물에 대해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불법성을 판단하고 있는데 집행 부분은 비실효적이고, 저작권 침해는 반복되므로 궁극적으로는 논의의 지평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정보제공청구 심의는 굉장히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임
- 변호사도 사건을 수임할 때 과연 고소인이 원고적격이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작권이 있는지, 독점적 권리가 있는지, 저작권을 양수받았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일일이 검토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함
- 이 업무만 하더라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많다고 판단됨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의 인원, 재원이 확장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정보제공청구는 변호사들이 손 안대고 코를 푸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에 있어 적절한 것인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음
- 마지막으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업무 내용, 성격, 범위 등에 비

취했을 때 보호원 내 다른 사업팀의 하나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독립된 조직인 사무국 형태로 분리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콘텐츠진흥원에서 분쟁조정위원을 역임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무국이 별도 조직화 되는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높았음

- C 위원 : 위원님의 정보제공청구에 관한 고견에 덧붙여 정보제공청구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자는 의견이 있음

연간 심의하는 수천 건의 정보제공청구에 대한 후속 조치나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없음

입법사항이긴 하나 6개월에 한 번씩 정보제공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실제로 잘 관리되는지와 관련해 사후적 조치로서 필수보고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A 위원 : 독립적으로 사무국을 신설하자는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함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심의위원 증원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하다고 봄

그리고 2016년도 10월부터 시정권고 심의를 하다 보니 기존의 침해 유형은 반복되고 다양한 유형의 침해가 새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이해됨

우리 심의위원회는 초반에 권리자뿐 아니라 이용자의 권익 또한 고려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막, 링크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다소 보수적으로 심의를 했었음

현재는 다양한 유형의 사안들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들을 겪게 되어 보수적인 기존 입장에서 점차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권고를 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 등 법적 한계에 의해 부결하는 경우가 발생함

변화하는 상황이나 시대적 흐름에 맞게 시정권고에 대한 입법을 재 정비해서 시정권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사무국 설치와 업무 확대가 보호원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음

- B 위원 : 사무국을 신설하고 확대하면서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 내용을 정리해서 국문 그리고 영문으로 알리는 기능을 수행하기 바람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인용하고 참조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연말에 2019년도 주요 심의사례집을 발간할 예정
이므로, 국문뿐 아니라 영문으로도 발간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음
- H 위원 : 보호원에서 권리자뿐만 아니라 학생, 전 국민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양강좌를 개설하면 좋겠음
- D 위원 : 여러 가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작권 보호 심의기능 강화와 관련된 논의는 종료하고 차후 전체회의에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심화하여 전개하도록 하겠음

6. 폐회 선언

- o 박성호 심의위원장이 제121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21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8. 27.

심의위원장 박성호

위원 강상욱

위원 강호갑

위원 손승우

위원 임진모

위원 전용준

위원 정태호

위원 백대용

위원 최승수